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5243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심정훈, 조세형

피 고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1.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상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화성시 D에 있는 E건물

[도로명주소]화성시 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8층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화성시 D 대 47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7.1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4748.5분의 17.128. 끝.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H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 체결 및 소외 C의 연대보증

소외 주식회사 H는 소외 주식회사 I와 전문협력 업체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I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5. 24. 피보험자를 소외 I,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5. 24.부터 2018. 5. 22.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청약서, 갑 제1호증의 2 보증보험 약정서}

한편, 소외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소외 H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보증보험 약정서 연대보증인 참조}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소외 I는 소외 H의 외상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2017. 11. 20. 통지하였고(갑 제2호증 보험금 청구서), 원고는 2017. 12. 11. 소외 I에 위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입금확인증)

다. 소결

그렇다면 소외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가. 소외 C의 처분행위

소외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전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피고에게 2017.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7. 19. 접수 제132087호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소외 C의 사해행위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소외 C은 위 매매계약으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피보전권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채권은 2017. 12. 11.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7. 5. 24. 이미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이미 소외 H는 소외 I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위 사해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가 가까운 장래인 2017. 12. 11.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자는 통상 상품판매대금이 연체되더라도 계속적 거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와 거래를 중단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더 이상 거래도 없고 최종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보험시효 완성 직전에 청구하는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늦어지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I 역시 소외 주식회사 H가 2017. 6.부터 외상물품대금을 결제 하지 않았음에도 2017. 11. 20.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갑 제2호증 보험금청구서)

(4) 소외 주식회사 H는 2017. 5.까지 외상물품대금이 32,004,665원이 있었고, 2017. 6. 외상물품대금 30,052,110원 중 12,589,665원만을 결제하였고, 2017. 7. 외상물품대금 15,447,080원은 전혀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2017. 8. 외상물품대금 1,224,740원에 대하여 19,415,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17. 9. 외상물품대금 40,814,510원은 전혀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7. 10.에 500,000원만 결제하고 최종 87,038,44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킨 점(갑 제5호증 사고조사내역서, 갑 제6호증 원장계정)을 감안할 때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라. 소외 C의 무자력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만을 감안하더라도 소외 C이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즉,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될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마. 채무자(소외 C) 및 수익자의 악의

1) 소외 C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C의 사해의 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더욱이,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대법원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소외 C의 누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악의(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외 C이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임이 명백하고, 대법원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따라서,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

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 2320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J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책임재산은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원 이상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결국 가액배상의 범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은 원고의 채권액 상당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우선 원고는 그 중 3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3. 이 사건의 토지관할

가.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 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결정에 따를 때 원물반환과는 달리 가액배상의 경우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금전채권채무관계이고, 실체법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 후단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

와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